EDWARD 시스템을 통한 외부강의등 신고 매뉴얼

교원인사팀

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

목차

Ⅰ 외부강의등의 신고

Ⅱ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Ⅲ 초과사례금 신고절차

EDWARD 시스템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 신고 안내

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

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

외부강의등의 구분

다수인대상 또는 회의형태의 강의, 강연, 기고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의결, 자문, 학회 등 **명목 불문**

외부강의등의 신고

-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**대가의 유무를 불문**하고 신고
-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, 자치단체, 국공립학교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(산하기관의 경우 제외대상이 아님)
- **사전신고를 원칙**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외부강의등 진행 후 **2일 이내 신고**

> **2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**

Ⅰ. 외부강의등의 신고

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
  - > 외부강의: **1시간당 100만원**
  - > 심의, 평가, 기고: **1회당 100만원**

  ※ 직급구분 없음
- 초과사례금 수수 시 필히 **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**
- 해외에서 진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상한액을 적용 받지 않음
  - > **단, 직무와 관련된 일반 기업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적용**

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EDWARD 시스템 → 일반행정 → 인사 →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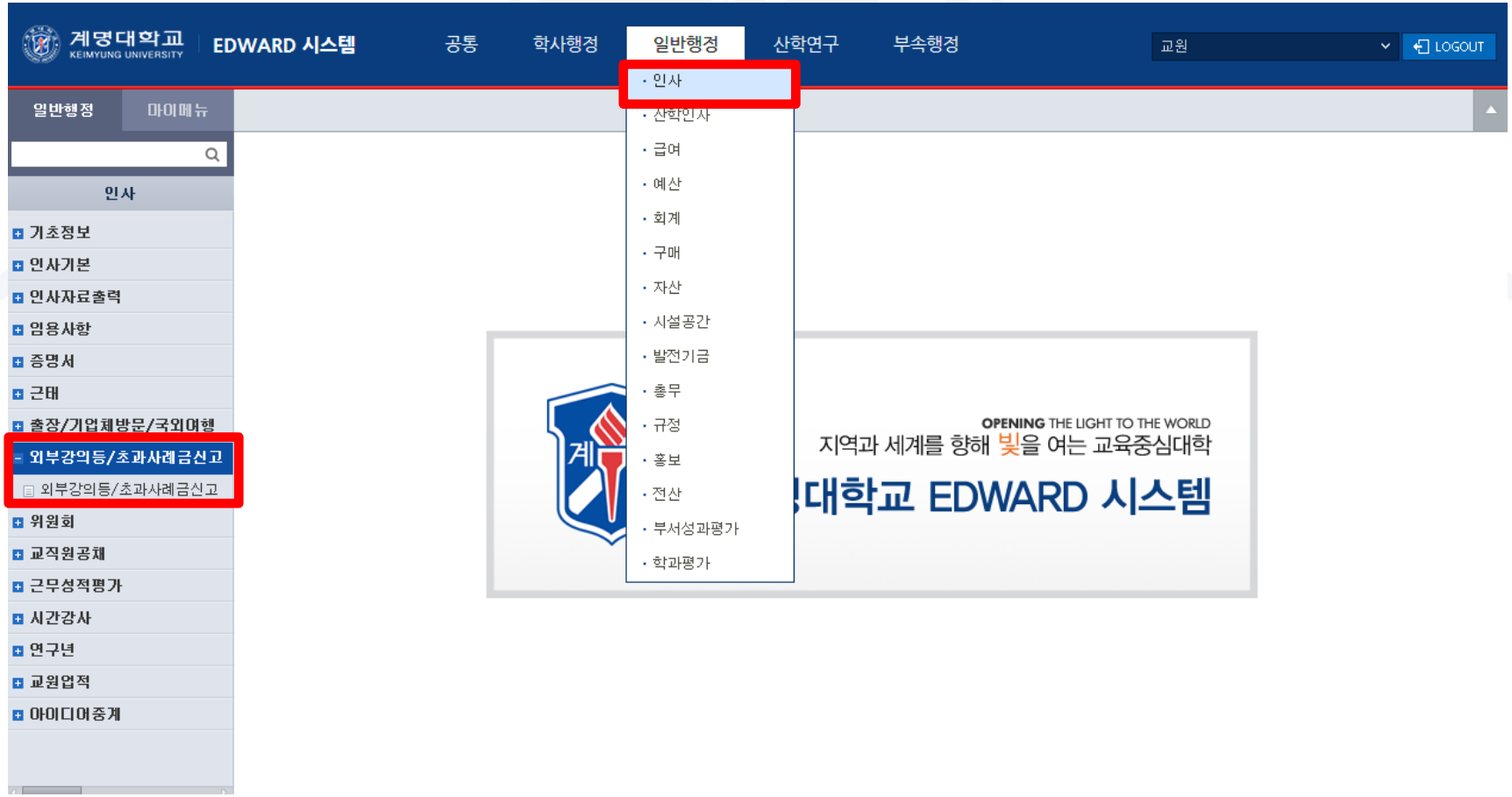

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추가버튼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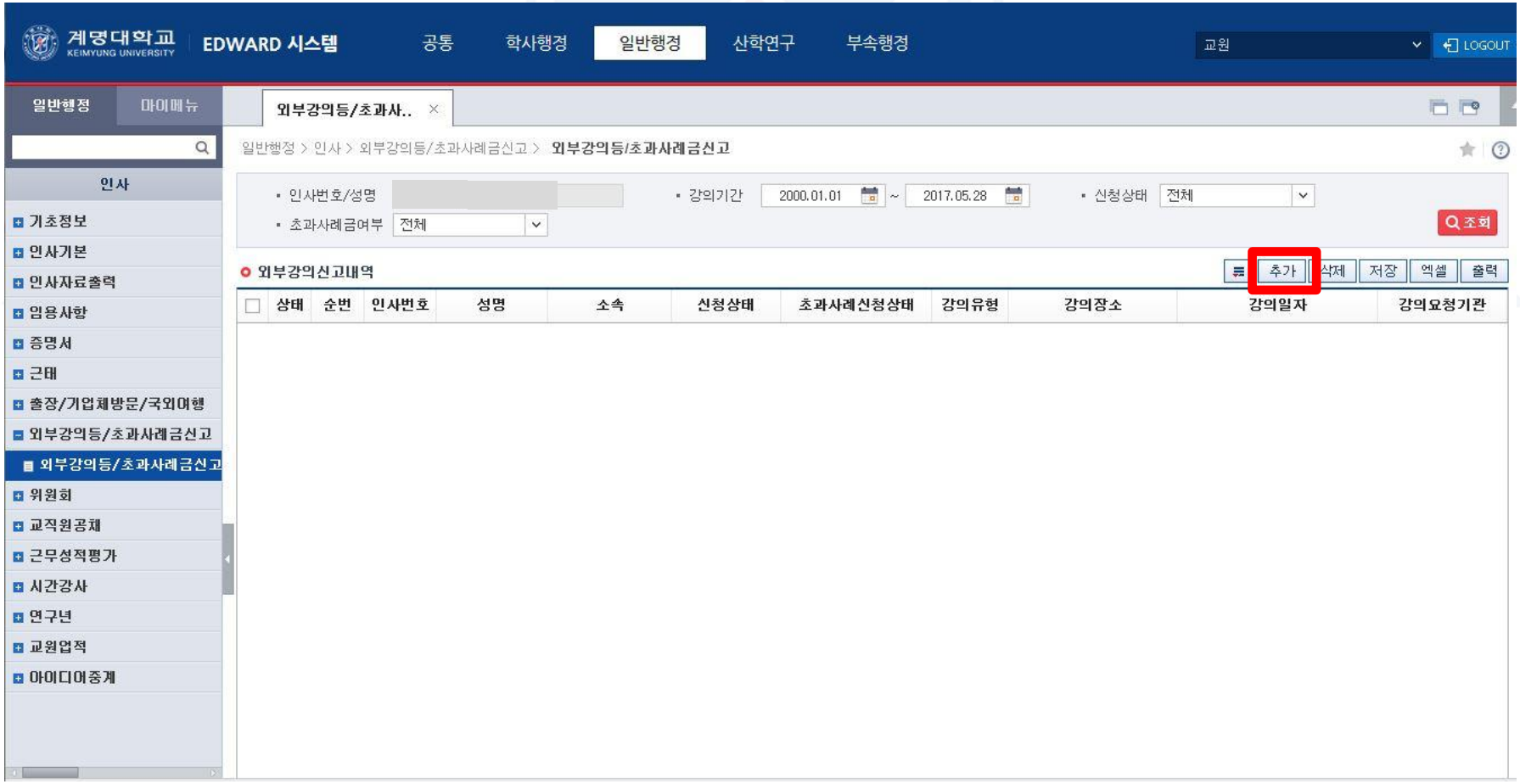

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신고내용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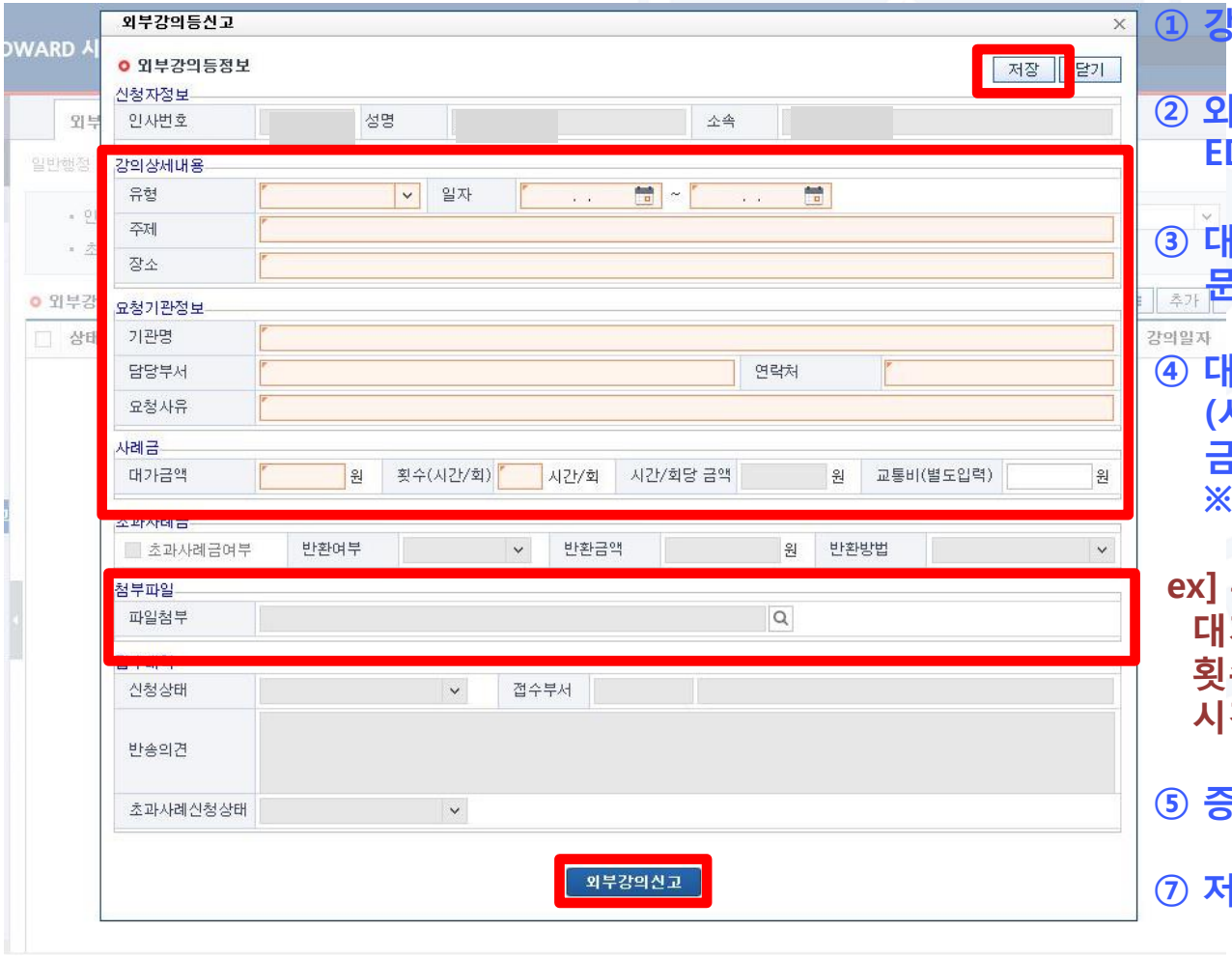

① 강의상세내용 입력

② 외부강의등 시행 후 2일이 지날 경우, EDWARD 시스템 상 신고 불가

③ 대가금액을 모를 경우, 요청기관에 문의하여 필히 신고내용에 포함

④ 대가금액은 총액을 입력하며, 횟수(시간/회)를 입력하면 시간/회당 금액은 자동계산
※ 강의: 시간 기준
심의, 평가, 기고 등: 횟수 기준

ex] 4시간 강의, 대가금액이 40만원
대가금액: 400,000원(입력)
횟수(시간/회): 4시간(입력)
시간/회당 금액: 100,000원(자동계산)

⑤ 증빙할 수 있는 관련 파일 첨부

⑦ 저장 후 외부강의신고 버튼 클릭

Ⅱ. 외부강의등 신고절차

사례금 작성 예시

예시 1) 4시간 **강의**를 1건 진행하고, 대가금액이 40만원인 경우

- 대가금액: 400,000원 입력
- 횟수(시간/회): **4시간** 입력(**강의**형태이므로 **시간기준**으로 입력)
- 시간/회당 금액: 100,000원**(자동계산)**

예시 2) 4시간동안 **심의/평가/자문**을 1건 진행하고, 대가금액이 40만원인 경우

- 대가금액: 400,000원 입력
- 횟수(시간/회): **1회** 입력(**심의/평가/자문** 등의 형태이므로 **횟수기준**으로 입력)
- 시간/회당 금액: 400,000원(자동계산)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

EDWARD 시스템 → 일반행정 → 인사 →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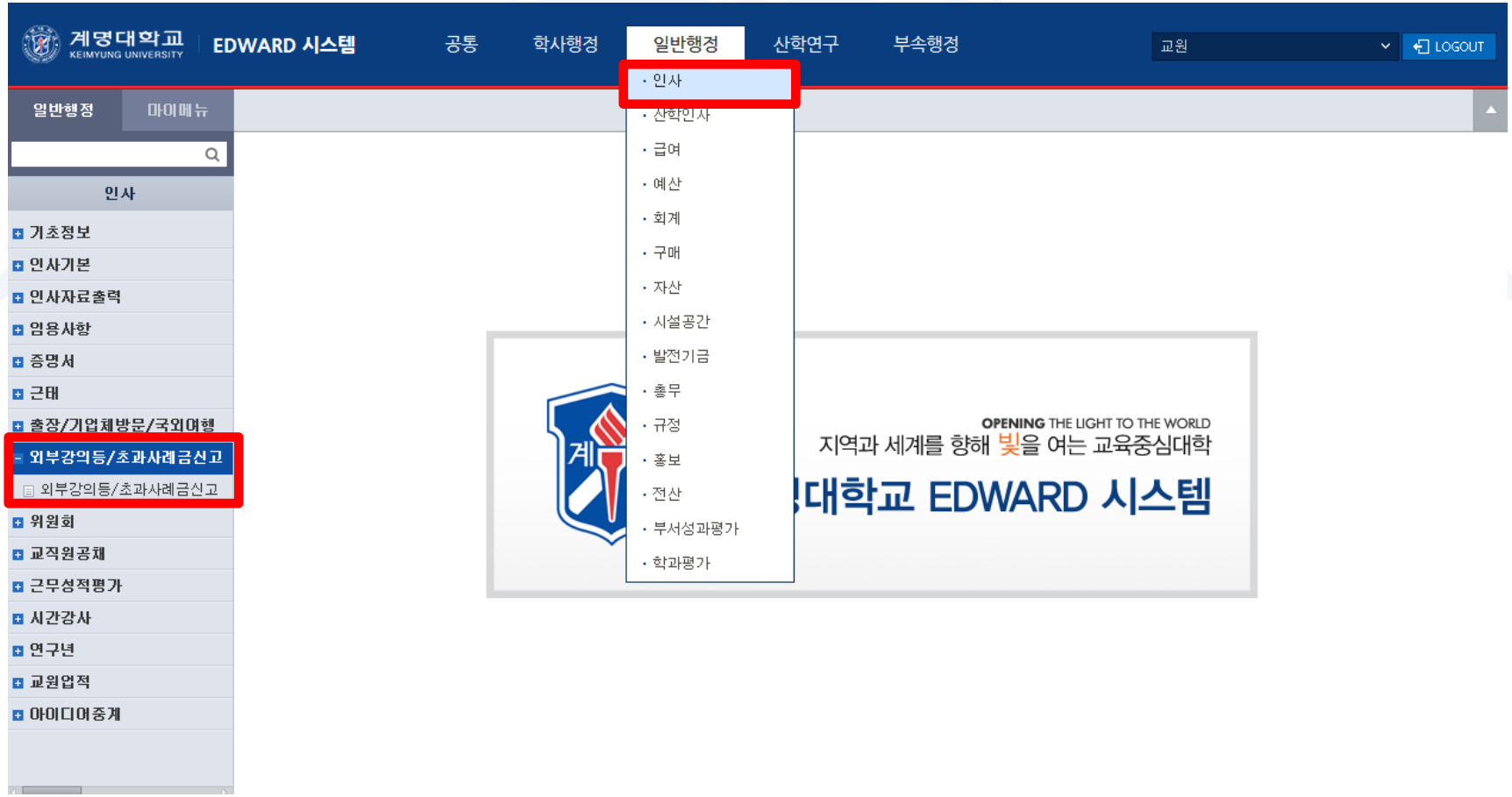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

외부강의등 신고서 조회 후 초과사례금 신고대상 건 더블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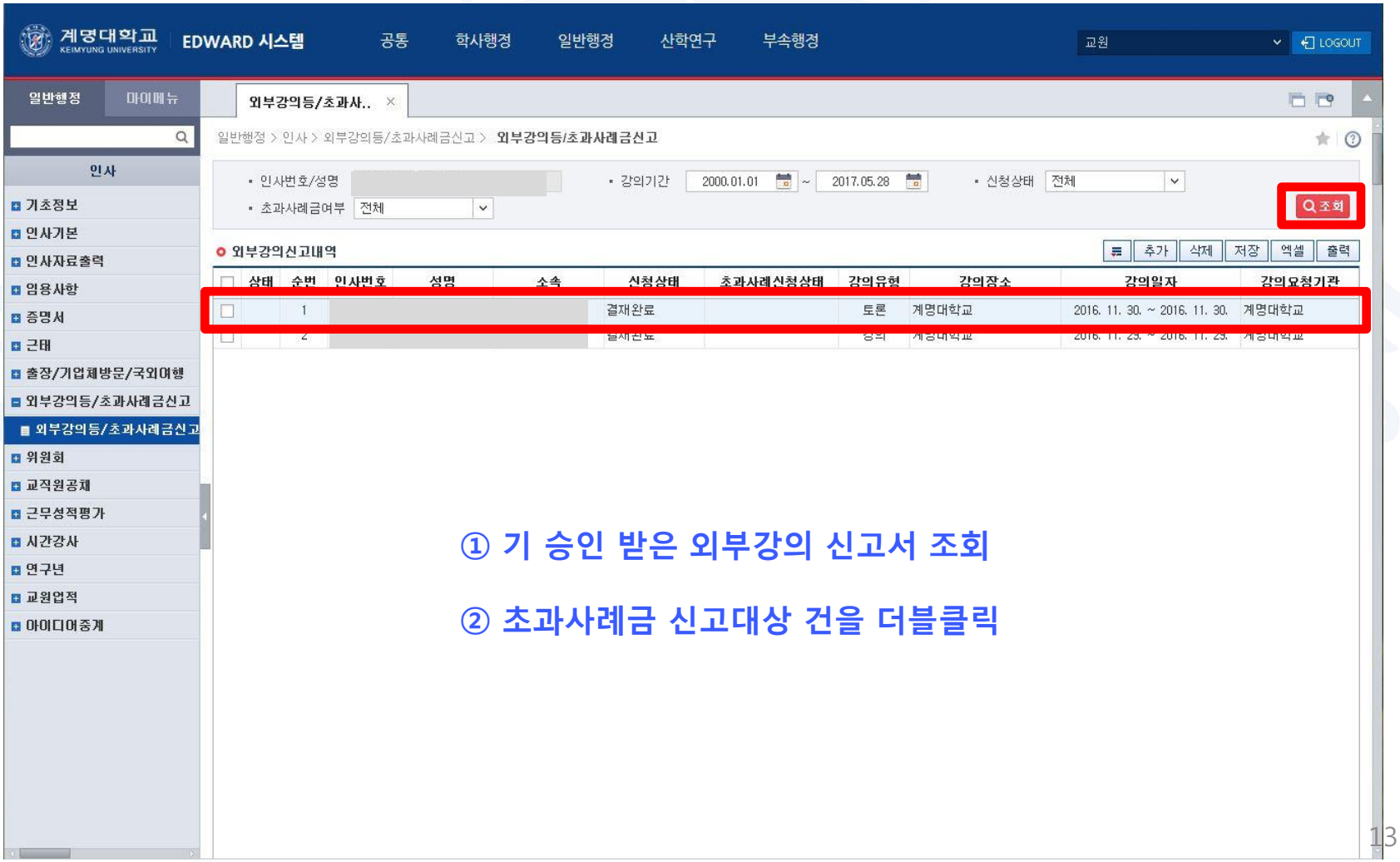

Ⅲ. 초과사례금 신고절차

신고내용 작성 및 신고

① 해당 신고내용 확인

② 초과사례금여부 체크

③ 초과사례금 관련 내용 작성

④ 초과사례금신고 버튼 클릭

감사합니다

계명대학교
KEIMYUNG UNIVERSITY